
새정부 경제정책방향

2022. 6. 16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現 우리 경제 상황	1
II. 새정부 경제운용 비전	4
III.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	5
1. 민간중심 역동경제	6
2. 체질개선 도약경제	14
3. 미래대비 선도경제	21
4. 함께가는 행복경제	27
IV. 당면현안 대응	35
1. 민생 안정	35
2. 리스크 관리	39
V. 2022년 경제전망	44
[별첨 1] 2022년 상세 경제전망	45
[별첨 2]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	5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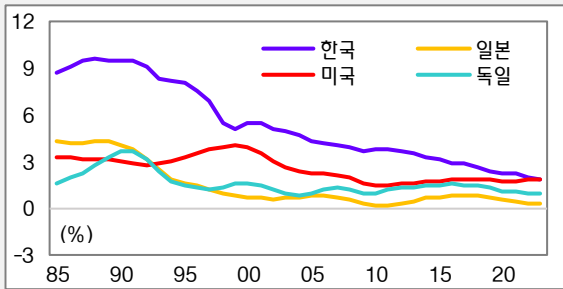
I. 現 우리 경제 상황

◇ 우리 경제 성장 기반은 '9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급속히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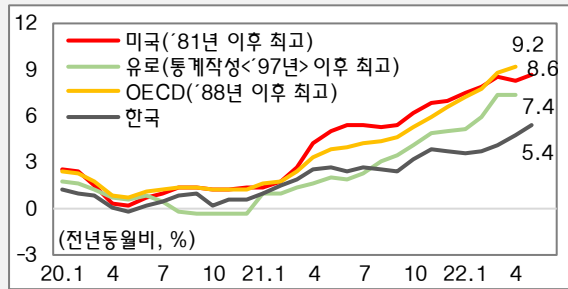
* 경제성장률(%) : ('90년대) 7.1 → ('00년대) 4.7 → ('11~'15) 3.1 → ('16~'21) 2.4

◇ 이러한 가운데,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약화

주요국 잠재성장률 추이(OECD)



주요국 물가 상승률 추이(OECD)



⇒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, 당면한 민생 어려움이 겹쳐 위기상황에 직면

1.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 누적

① 산업·기업 역동성이 지속 둔화되며 민간활력이 크게 약화

○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, 최근 과도한 규제·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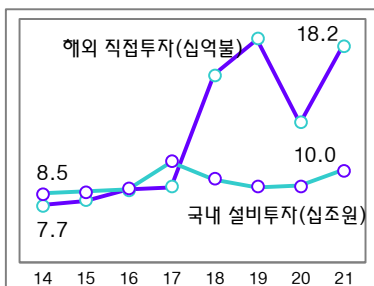
* '21년 OECD 38개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,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

▪ 기업들의 급속한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도 둔화

* 제조업 취업유발계수(명/10억원) : ('00) 11.2 → ('10)9.8 → ('15) 8.7 → ('19) 7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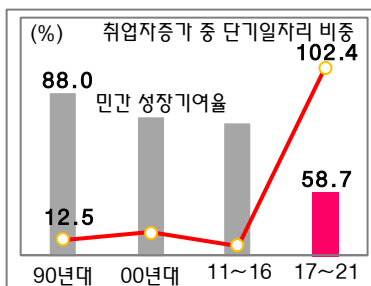
○ 민간의 성장·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활력은 더욱 저하되고 일자리는 단기·재정·고령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

제조업 국내·해외투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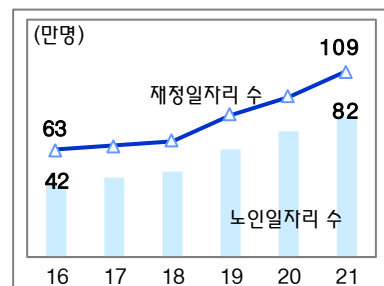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수출입은행, 산업은행

민간 성장기여·단기 일자리



* 출처 : 한국은행, 통계청

재정·고령일자리



* 출처 : 기획재정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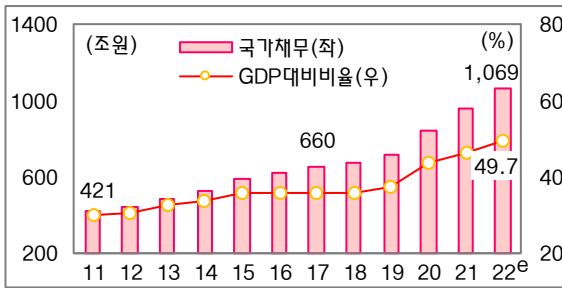
② 경제·사회 체질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·성장잠재력 하락

○ (공공) 재정 중심 경제운용, 코로나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, 연금개혁도 지연되며 지속가능성 우려 확산

▪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이 급증하였으나, 수익성과 부채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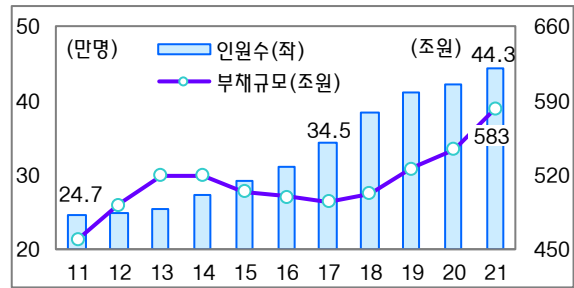
* 공기업 이자보상배율(%) : ('16) 3.7 ('17) 2.7 ('18) 1.5 ('19) 1.3 ('20) 1.4 ('21) 0.1

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



* 출처 : 기획재정부 ('22년 2차 추경 기준)

공공기관 인원 및 부채규모



* 출처 : 알리오

○ (노동) 획일적 규제, 경직적 노사관계, 연공 중심 임금체계 등이 청년·여성 등 신규채용 확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제약

* 근속연수 30년 이상/1년 미만 임금(배, '18년) : (韓<20년>) 2.95 (獨) 1.80 (佛) 1.6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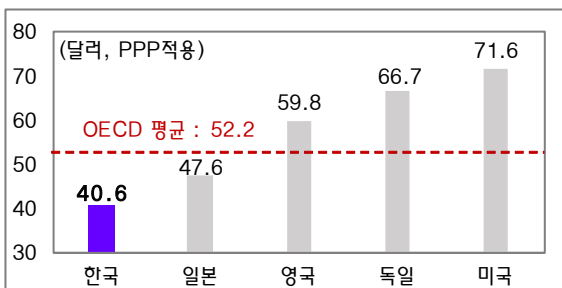
* 노동시장 경쟁력(IMD, '22년) : 63개국 중 노동시장 경쟁력 42위, 노동생산성 51위

○ (교육)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, 대학 자율성 제약 등으로 교육경쟁력이 낮고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간 미스매치 심화

* 교육경쟁력(IMD, '22년) : 63개국 중 교육경쟁력 29위,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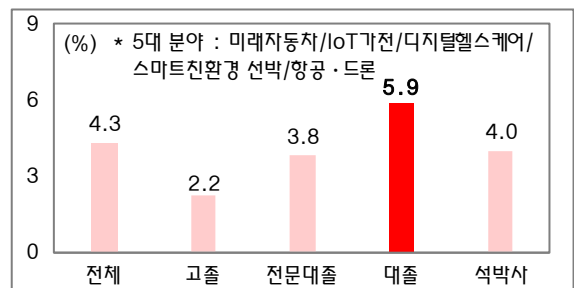
* 5대 유망신산업 인력수요 : '20년 24만명 → '30년 38만명까지 증가 예상

주요국 시간당 노동생산성('19년)



* 출처 : OECD

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술인력 부족률('20년)



*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

○ (금융·서비스산업)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·서비스 산업 혁신이 지체되며 총요소생산성 지속 하락

*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(%) : (韓) 49.6 (美) 83.0 (OECD평균) 80.2

*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율(% , '01~'17) : (韓) 19.4 (美) 34.5 (英) 35.3 (獨) 59.4

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위축도 성장세 제약

○ 그간 여러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, 저출산·고령화가 지속 심화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전환되는 등 인구 축소시대 도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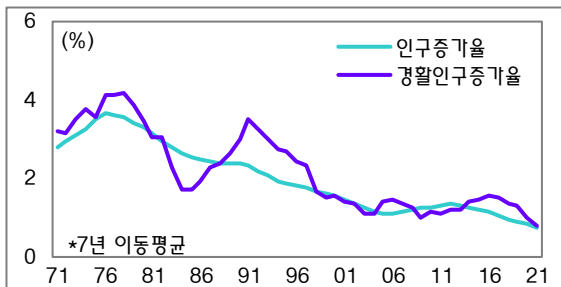
* 생산가능인구 증감(만명) : ('00)28.2 → ('10)30.7 → ('20)△24.9 → ('22)△35.5

○ 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·여성 고용률 제고 및 외국인력 확보 노력 부족 등으로 노동투입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

* 노동투입 잠재성장 기여도(%) : ('11~15)0.7 → ('16~20)0.2 → ('21~22)△0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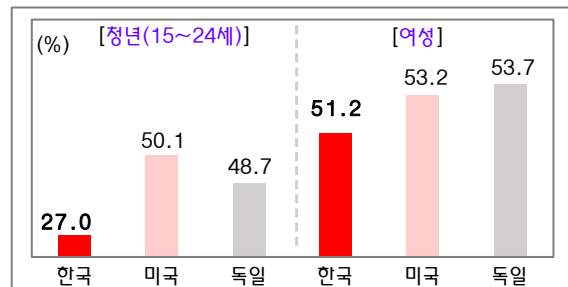
* 외국인 체류인력 추이(만명) : ('10) 55.8 → ('15) 62.5 → ('19) 56.7 → ('21) 40.7

인구·경활인구 증가율



* 출처 : 통계청

청년·여성 고용률(21년)



* 출처 : 통계청, OECD

2.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, 대외 불확실성 확대

□ 글로벌 에너지·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

* 국제 원자재가격(작년말 대비, %) : (두바이유)54 (옥수수)29 (밀)36 (콩)27 (니켈)22

* 물가 상승률(%) : ('21.2/4) 2.5 (3/4) 2.5 (4/4) 3.5 ('22.1) 3.6 (2) 3.7 (3) 4.1 (4) 4.8 (5) 5.4

□ 우크라이나 사태, 공급망 차질·인플레이션 심화,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, 中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산

* '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(%) : [IMF] ('21.10월) 4.9 → ('22.1월) 4.4 → ('22.4월) 3.6
[OECD] ('21.12월) 4.5 → ('22.6월) 3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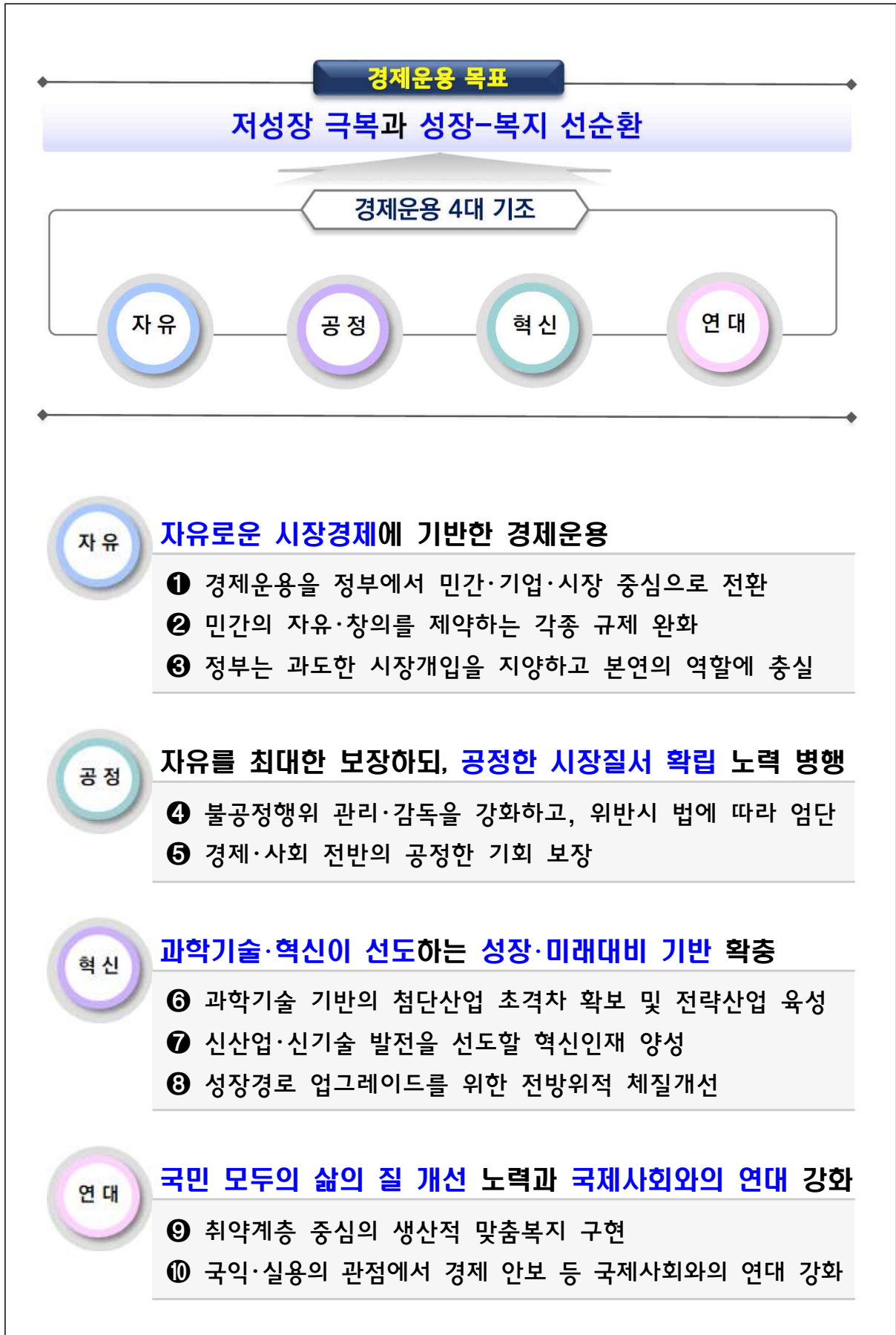
○ 국내적으로도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투자 부진 심화

* 제조업 BSI : ('21.12) 95 ('22.1) 90 (2) 91 (3) 84 (4) 87 (5) 86

* 설비투자(전기비, %) : ('21.3/4)△0.8 (4/4)△0.2 ('22.1) 2.1 (2)△5.6 (3)△2.2 (4)△7.5

👉 새정부는 과감한 경제운용 기초 전환을 통해 당면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·양극화 해소 기반 마련 필요

II. 새정부 경제운용 비전



Ⅲ.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

기본 방향

목표

저성장 극복과 성장-복지 선순환

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

민간중심 역동경제

- ✓ 규제혁파 · 기업활력 제고
- ✓ 기업투자 확대 · 일자리 창출
- ✓ 중소 · 벤처기업 육성
- ✓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
체질개선 도약경제

- ✓ 공공 · 연금개혁
- ✓ 노동시장 개혁
- ✓ 교육개혁
- ✓ 금융 · 서비스산업 혁신

자유 · 공정
혁신 · 연대

미래대비 선도경제

- ✓ 과학기술 · R&D 혁신
- ✓ 첨단 전략산업 육성
- ✓ 인구구조 변화 대응
- ✓ 탄소중립 · 기후위기 대응

함께가는 행복경제

- ✓ 사회안전망 강화
- ✓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
- ✓ 복지시스템 고도화
- ✓ 지역균형 발전

4 대
정책
방향

당면
현안
대응

민생 안정

- ✓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부담 완화
- ✓ 주거안정

리스크 관리

- ✓ 경제안보 대응
- ✓ 위기관리 강화



[1] 규제혁파 · 기업활력 제고

◇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·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

①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마련

- (추진체계)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·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「경제 규제혁신 TF」 신설
 - 현장애로 해소¹⁾, 환경, 보건·의료, 입지,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(기재부 1차관 총괄)²⁾을 구성하여 추진
 - 1) 투자·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·해소
 - 2) 작업반 구성 : 총괄반 + 5대 분야(현장애로 해소, 환경, 보건·의료, 입지, 신산업) - 작업반별로 기재부,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 참여
 -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성과창출 지원

② 규제비용감축제, 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

- (규제비용감축제) 원인 투아웃(One In, Two Out) 룰¹⁾ 도입·관련제도 정비²⁾
 - 1) 규제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 폐지·완화
 - 2) 신설·강화 규제영향 분석시 폐지·완화 규제를 병행 검토 의무화
- 부처별 감축목표율*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 규제 감축 유도
 - *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율을 200% 내외로 조정
- (규제일몰제) 신설·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 실효성 제고
- (규제영향분석) 법령 제·개정시 규제영향 분석 내실화

*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

3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을 통해 규제개혁의 걸림돌 제거

【 지방정부 주도 규제혁신 】

- (규제권한 지방이양) 각종 인·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 추진
 - * (예시)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 권한은 '09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용도 등 결정 가능
-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 진행(국조실·행안부·기재부)

【 덩어리 규제 해결 】

- (규제 원샷해결) 다수 부처·지자체 연관 덩어리규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·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'규제 원샷해결' 도입
 - ▶ (선정) 기업·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덩어리 규제 발굴, 선정
 - ▶ (검토)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, 규제비용·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 마련
 - ▶ (확정) 이해관계자·관계부처 대상 심층검토 및 사전조정을 거쳐 개선안 확정

【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 】

- (상생혁신펀드)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·민간 등이 참여하는 「상생혁신펀드」 조성 검토
 - * 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법적근거, 재원조성 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
- (규제샌드박스 플러스)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·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
 - 규제 심의기한¹⁾ 및 법령 개정계획 수립·통보²⁾ 등도 의무화

1) 과제접수 후 90일 이내 규제특례위에 상정(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30일 연장)

2) 실증 종료 및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에 규제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

4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·제도를 시대흐름에 맞게 재정비

- (입지규제) 기업이 시설투자·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
 - 관계부처 합동 「경제 규제혁신 TF」에서 검토·방안 마련
- (불합리한 차별규제)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·분석하여 규제 합리화 검토·추진
 - * (예시)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, 공공조달 계약상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 등
- (경제력집중 감시 규제)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조정* 및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
 - * (현행) 연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원 이상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%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% 이상인 경우
(개선)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매출액·구매액 기준 등 상향('07년 이후 기준 미개정)
- (도시 용도지역제) 융·복합 시대에 맞춰 도시공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제 개편 추진
 - * (예시) ▶ 저이용된 기존 지역이 고밀화된 주거기능 갖추도록 '고밀주거지역' 신설
▶ 민간사업자가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토록 '도시혁신계획구역' 도입
▶ 주거·상업·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위해 '복합용도계획구역' 도입
- (산업분류) 신산업 등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 개정 등 지속 추진
 - * (예시) 산업분류상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업종코드가 불명확하여 산단 입주시 불확실성으로 작용 → 표준산업분류 명칭 변경 등 명확화 추진
- (그림자 규제) 법령이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개선 추진

[2] 기업투자 확대 · 일자리 창출

◇ 민간·기업·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·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

① 기업의 투자 · 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

- (법인세)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(現 4단계)을 단순화하고, 최고세율(現 25%)을 22%로 인하
- (배당소득과세)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
 -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*
 - * (현행) 일반·지주회사/상장·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~100% (개선) 일반·지주회사/상장·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
 -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*
 - * (현행)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(익금)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,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
- (이월결손금)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*
 - *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% → 80% <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% 유지>
- (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)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,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·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* 제도 폐지
 - * 투자·임금·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%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

② 세대 간 기술 · 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기업승계 활성화

- (기업승계 특례)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·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 추진
 - 납부유예 제도*를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
 - *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·상속·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

-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(0.4조원→1조원) 하고, 사후관리 기간 축소(7년→5년) 및 요건 완화
-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

③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

- (경제 형벌규정)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, 형량 합리화 등 추진
- 법무부·공정위·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주요 과제 발굴 및 개선
- (중대재해처벌법 관련)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 추진*(22.7월~)
 - *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, 처벌규정·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(전문가 TF 운영)
- (공정거래법 관련)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·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 개정
 - * 부당지원 : (현행) 정상가격, 지원금액 등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사전 판단 곤란 → (개선) 거래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(22.下)
 - 사익편취 :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,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대법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(23.上)

④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·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

- (국가전략기술 등)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
- 대·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
 - *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(%) : [현행] (대) 6~10 (중견) 8~12 (중소) 16~20
[변경] (대·중견) 8~12 (중소) 16~20

- 반도체*·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 기술 세제지원 확대

*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

- 현재 2조원+a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*, 지원 규모 및 운용기간(~'23년 → ~'25년) 추가 확대 추진

*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원범위에 추가

- (통합고용세제)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'통합고용세액공제*'로 개편하여 지원체계 일원화·확대

* 고용증대 세액공제,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 통합

[3] 중소기업 육성

◇ 중소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적극 뒷받침

1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

- (성장·혁신지원) 기존 생존 중심에서 자생력·경쟁력 제고·혁신 성장 등에 집중 지원

- 전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·정책금융을 혁신성·성장성 관점에서 평가*하고 혁신형·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 확대

* '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 방안' 마련('22.下)

혁신성·성장성 중심 정책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공동기준 개편('22.12월)

- R&D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

- (신산업 진출 지원)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사업전환 인정범위* 확대

* (현행) 타업종 전환+업종추가시 인정 → (개선) 동일업종내 신사업 전환 등 인정

②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

- (혁신창업) 민간 주도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
 -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'창업중심대학'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(CVC) 활성화 등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
 - '先민간투자-後정부지원' 방식의 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'가칭)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' 신설('22.3/4)
- (스케일업) 신시장 개척,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
 -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'초격차 스타트업'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·지원 확대
 -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(現 5천만원→ 2억원)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
- (투자선순환)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 선순환 체계 강화
 - 세컨더리 펀드 확대 조성, 인수합병(M&A)·기업공개(IPO) 관련 규제 개선 등 회수시장 활성화 추진
 -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및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편당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 강화
- (글로벌 유니콘 육성) 유망 벤처기업의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
 - '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' 가동,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·육성
 - K-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를 통해 우수 벤처·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스톱 지원
- (재기 지원) 창업·벤처의 원활한 재도전·재기를 위해 창업자 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 검토

[4]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
- ◇ 기업들의 규제·부담은 완화하되,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

①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
- (불공정행위)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, 신기술 탈취,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처벌 강화
 -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*
- *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선
- (경쟁제한적 규제) 진입제한·사업활동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

② 플랫폼 경제, 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 위한 시스템 마련

- (납품단가 연동제)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·추진
 -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,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('22.下) 등을 통해 수용성 높은 방안 강구
 - 조정협의제도 개선*,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 문화 유도 병행
- * (예시)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상 대행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
- (플랫폼 경제) 민간 주도 자율규제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
 -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여 플랫폼·소상공인·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* 마련
- * (예시)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, 자율규약 마련, 상생협약 체결, 모범계약서 마련
- 기재부·과기정통부·중기부·공정위·방통위·개인정보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뒷받침
-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 등 모니터링 지속 병행

①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

공공·연금개혁

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

- 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
- ②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
- ③ 적정 노후소득보장·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

노동시장 개혁

획일적 노동규제·관행을 노사 자율·선택 방식으로 전환

- ④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
- ⑤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

교육개혁

현장수요 맞춤 미래 혁신인재 양성

- ⑥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
- ⑦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·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

금융혁신

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

- ⑧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 및 민간의 역동적 혁신 지원 강화
- ⑨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

서비스산업 혁신

서비스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

- ⑩ 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기반 마련
- ⑪ 제조업-서비스업 간 지원 차별 해소

② 구조개혁 추진체계

-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 여건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각 부문별로 개혁과제 구체화·추진방안 마련(~'22년)
- 공청회,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
- 부문별 개혁의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 내 구조개혁 이행 점검 협의체 수시 가동

[1] 공공·연금개혁

◇ 재정·공공기관·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·효율성 제고

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 추진

- **(건전재정 기초 확립)**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, 새로운 재정운용 틀 마련
 - 새정부(22~27년)의 재정수지,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* 방안 강구
 - * 민간투자 활성화·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, 지출 재구조화 등 검토
 -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*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·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
 - *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 마련 예정
↳ [22.下] 재정준칙 상세기준 마련 및 입법 추진
- **(재정제도 혁신)** 교육재정교부금,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된 재정제도들을 경제·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
 - 학령인구 감소,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* 제도 개편 추진
 - * 현재 내국세의 20.79%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, 유·초·중등교육에만 투자
 - SOC·R&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하고(500→1,000억원) 예비타당성 조사시 사업별 특수성, 다양한 사회적 편익* 등 반영
 - * (예시) 철도 통행의 쾌적성·정시성, 수질오염개선 편익 등
- **(성과관리체계 개편)**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제고 및 재정 절감
 - 성과평가결과를 토대로 低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평가제도의 시기·절차 등을 표준화
 - * 5개년 단위 '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'에 구체적인 내용 반영 예정(22.7월)
- **(중장기 재정전략 수립)**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「(가칭)재정비전 2050」 수립·추진
 - * (22년말) 민관합동 재정 미래상·구체적 액션플랜 마련 (23년초)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

②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

- (기능·인력 조정) 주기적 업무점검을 통해 기능·인력 등 조정
 -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·중복되는 업무는 정비
- (자발적 혁신유도)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·인력 재조정,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
 -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'혁신지침' 등 준수 여부도 점검하여 경영평가에 반영
- (재무건전성 확보) 高 재무위험기관*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여 건전화계획 수립 및 출자·인력·자금관리 강화 등 추진
 - * 부채비율,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·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대상기관(39개) 중 10여개 기관 선정
 - 중장기 재무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, 사업 구조조정,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계획 마련
- (직무·성과중심 전환)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·인사·조직 관리를 직무·성과 중심으로 전환*
 - *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, 직무전환교육,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 추진

③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

- (공적연금 개편) 국민연금 재정계산(~23.3월)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(~23.下) 및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 추진
 - *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·책임성·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 병행
- (사적연금 활성화)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* 등 개인·퇴직연금의 가입률·수익률 제고 유도
 - *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:
(현행) 연금저축 400만원<퇴직연금 포함 700만원> → (개정) 600만원<900만원>
- (건보료 부과체계 개편)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*,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(22.下)
 - *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(최대 1,350만원 → 일괄 5,000만원)

[2] 노동시장 개혁

- ◇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,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 * '22.6월중 구체적 추진방향 확정·발표

①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

- (제도개선)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및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
 -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 개선
 -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 병행
 - ▶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
 - ▶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
 - ▶ 스타트업·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
 - 실태조사·현장분석 및 전문가·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('22.下) 후, 법 개정안 국회 제출
- (보완방안) 제도개편 전까지 규모별·업종별 컨설팅·설명회 등 근로시간 운영 지원 및 휴일·휴가 활성화 추진

②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·확산

- (정보제공 강화)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하여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*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 보급
 - * (현행) 직업 대중소분류별 임금정보(개선) 직무별 업무기술지식 요구수준 및 임금정보 제공
- (컨설팅 확대)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·평가체계 도입 지원
 - ※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('22.下)

③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·논의 추진

- 경사노위내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, 과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 추진
 -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우선하되,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

[3] 교육개혁

◇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추진

①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

- (대학규제 혁파) 학과정원·대학평가·학사관리·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 규제 개편 추진
 -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¹⁾ 하고,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²⁾ 마련('22.下)
 - 1) 교시, 교사,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
첨단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·교원확보율 기준 개선 등
 - 2) 첨단산업 분야 교육시설 확충 및 실습장비 고도화도 적극 지원
 - (가칭)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관련 법령·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신규 개선과제 발굴('22년~)
 - 획일적 대학평가를 자율계획에 따른 先재정지원後성과관리로 개편('22.12월)
- (재정여건 개선)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재정 확충
 -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
 - 유휴 시설·재산을 활용한 수입 다변화 및 재정지원사업 집행 방식 자율 확대 등 대학의 재정 자율성 강화

②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·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

- (지역중심 교육체계) 지역내 산업·기업의 필요인력 적시 공급을 위해 지방(전문)대,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·교육과정 등 개편
 - * (지방대)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 주도
(전문대)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, 거점 전문대 평생교육 강화 등
(직업계고) 지역수요에 맞춘 학과교육과정 개편, 권역별 AI·SW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 등
- (신산업 인재양성 협업체계)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, 제도개선·재정지원을 포괄하는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 마련('22년)
 - * 분야별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한 신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·전망 고도화 병행

[4] 금융혁신

◇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·실물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, 금융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·제도 재정비

① 디지털 혁신금융 및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

- (규제혁신)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, 금융산업 규제 전반 개선*
 - * (예시) 금융사와 비금융사(IT 등)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 완화
- '금융규제개혁 TF*(가칭, 신설)'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, 빅테크 성장,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·혁신 과제 발굴·추진
 - * 금융위 등 금융감독유관기관, 금융업권, 학계·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
- (디지털자산 제도화) 「디지털자산 기본법*」 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
 - * (예시) 디지털자산 발행,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
- (정책금융 역할 재정립)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*
 - * (예시)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 점진적 축소, 정책금융 성과평가·발전적 재편 추진
- (신뢰편의 제고)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,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,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(22.3/4)* 등 추진
 - * (현행) 예대금리차 개별공시(3개월 주기) → (개선) 비교공시(1개월 주기)

②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

- (자본시장)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*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 뒷받침
 - *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,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, 낡은 규제 혁파 등
-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¹⁾,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(22년 0.23% → 23년 0.20%)²⁾
 - 1) (현행)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 (개선) 초고액 주식보유자(종목당 100억원 이상)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폐지
 - 2) 당초 금투세와 연계 인하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, 선제 인하(코스피/코스닥)
- (외환시장)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, 개장 시간 연장*, 공정한 경쟁여건·거시건전성 제도보완 추진(22.3/4 발표)
 - *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(한국시간 2시)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

[5] 서비스산업 혁신

◇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

① **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 마련**

- **(규제혁신) 콘텐츠, 관광,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**
 - **‘경제 규제혁신 TF’를 통해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·추진**
 - * (예시)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,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·제도 기반 마련 등
- **(육성기반)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**
 - **(서발법 2.0)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 원점 재검토*·입법 추진**
 - * (예시) 제조업-서비스업간, 서비스 업종간 융복합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
디지털 전환 촉진 및 이에 따른 인력 재교육 등에 대한 지원
 - **(서비스수출 지원) 법령정비, 통계구축, ‘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’ 구성 등 서비스수출 지원 기반 강화**
 - **(서비스R&D 활성화) 민간 R&D 인센티브 제고, 유망서비스업 중심 정부 R&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**

② **제조업-서비스업 간 세제·금융·재정·입지 상 지원 차별해소**

- **(세제) 고용·투자·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서비스업 차별을 해소 (예: 업종확대 등)하고 신성장 서비스업(예: OTT 등)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**
- **(금융)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,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모형 개발 검토***
 - * 기술금융 표준기술평가모형에 콘텐츠 등 서비스분야 특화모형 필요성 검토
- **(재정) 일부 업종에 한정된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 단계적 확대**
 - * (현행) 정보통신업금융업전문서비스업(22.9월시행) →(개선) 사업서비스업 직업훈련교육업등추가
 - ※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 후 구체적 내용 확정
- **(입지) 산업단지 관리권자 자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***
 - * 비수도권 업종특례지구 요건 완화, 업종특례지구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허용 확대

[1] 과학기술 · R&D 혁신

◇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개편·지원

① 신기술 확보 ·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 · R&D 정책 수립

- (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)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* 수립(‘22.11월)
 - * ①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, ②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, ③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, ④대학·출연연·기업간 상호 융합·협력 생태계 조성
- 경제·외교·안보 관점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‘국가 전략기술육성특별법*’ 제정 및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 추진
 - * 연구개발 관리체계 마련, 핵심인력 양성·국내외 기술협력 등
- (R&D 선정) 신속한 문제해결·기술확보에 중점 두고 제도 개편
 - 국가·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(AI, 디지털전환 등), 초격차 기술 확보(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) 등에 R&D 중점 투자
 - 신속한 R&D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R&D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1,000억원(現 500억원)으로 확대하고 Fast-Track 허용
- (R&D 평가)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R&D 평가 시스템 마련·실시
 - R&D 성과의 활용·촉진을 위해 실증, 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 지표로 개발·적용하고 국제기준 등 R&D 평가시스템 개선
- (국제협력)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주·양자·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「국제협력 R&D 프로젝트」 추진*
 - * 한미간 달탐사 및 착륙 공동연구, 양자정보 과학,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등

② 기술사업화,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

- (기술사업화 촉진)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및 초격차 스타트업 1,000 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 과학기술 기반 창업 촉진
 - * 범부처 '제8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' 수립('22.4/4)
 -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 민간 투자기관이 시장성을 평가하고, 스케일업 투자펀드·CVC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도입
 -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, 기술혁신 제품판로 지원까지 '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' 지원체계* 구축
 - * (발굴) 연구성과 발굴·기반 구축 → (실용화 R&D) 기술 스케일업(기술고도화, 기술이전) → (투자)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→ (판로) 혁신제품 지정·시범구매
- (국제표준화) 표준화 선점이 중요한 분야(5G·6G·미래차 등)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R&D 성과물 국제표준화 추진

[2] 첨단 전략산업 육성

◇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

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지원

- (신산업 전략) 글로벌 성장전망, 기술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* 마련·추진
 - * 국가적 도전과제 설정, 세부산업기술 지원수단방안 설계→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('22.12월)
 -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·생산역량 확충,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」 수립
 - * 첨단전략기술·산업 지정('22.3/4) 및 종합 육성계획 수립→첨단전략산업위 상정('22년중)
- (초격차 확보)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, 인력양성,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 지원
 - (투자)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·용수·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,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 지원 강화

- (인력)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방안도 마련
- (생태계) 대-중소기업 수요연계 협력모델 발굴, 핵심 원천기술 R&D 지원,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공고화
- (민관협력) 대학(기초연구)-연구소(응용연구)-기업(개발연구) R&D 및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·학·연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

②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

- (유망 신산업 육성) 인공지능, 바이오, 모빌리티·물류, 항공·우주,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원
 - 차세대 AI,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 조성
 - * (AI)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('22.6월~), 재난안전·환경분야 AI 선도과제 추진('22.5월 (AI 반도체)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(NPU Farm) 구축 및 실증('25년 (데이터)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제1차 기본계획 수립(~'22.12월)
 - 바이오, 자율차,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 - * (지능형바이오) 빅데이터·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 구축('25년 (자율차) 핵심 첨단인프라(C-ITS,정밀도로지도)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(~'27년 (물류)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(~'22.10월),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(~'26년)
 - 우주, 로봇,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('22년말~'23년)
 - 정책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-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
 - * (정책금융)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대상 정책금융 투자 (해외진출)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해외진출 활성화 등
 - 데이터 활용,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·고도화
 - *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('22.下),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가동 등
- (원전경쟁력 강화) 일감 조기창출, 차세대 원자로 개발, 수출 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
 -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
 - 혁신형 소형원자로(SMR), 4세대 원자로,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 집중 추진
 - '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

[3] 인구구조 변화 대응

◇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대비 확충

① 핵심과제 중심의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마련

- (기본방향) '4대 분야 8대 핵심과제*'를 중심으로 인구문제 대응
 - * ①경제활동인구 확충(경제활동 참여제고, 인적자본 확충), ②축소사회 대비(학령·병역자원 감소, 지방소멸 대응), ③고령사회 대비(고령층 복지, 돌봄서비스 확충), ④저출산대응(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, 청년층 맞춤형 지원) → '22.7월 이후 분야별 대책 순차 발표
- (추진체계) 관계부처·연구기관·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 대응 TF(기재부)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응

② 경제활동인구 확충, 축소·고령사회 대비, 저출산 대응 핵심과제 추진

【 경제활동인구 확충 】

- (여성·고령자·외국인)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, 고령자 계속고용*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여성·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
 - * 계속고용방식 등을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논의
-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*하고, 정책추진체계 개편 등 범정부차원의 외국인 정책 개편 종합 검토
 - * ①첨단 과학기술 분야 네거티브 방식 비자 도입, ②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 발급기준 완화, ③지역특화비자 신설, ④숙련인력쿼터 확대, ⑤고용허가제 전면개편 등
- (인적자본) 전국민의 평생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 수립('22.下) 및 재직자 등 대상 일터-대학 순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('23년~)

【 축소·고령사회 대비 】

- (학령·병역인구 감소) AI·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 병력구조 개편 추진
 - 축소사회에 대비한 로봇, AI·IoT, 디지털헬스 등 유망산업 및 현 고령화 세대 경제력에 걸맞는 고품질 서비스시장 육성

- (의료·돌봄·요양시스템) 재택의료센터* 도입·확산, 지역의료·돌봄 체계 연계 등 의료·돌봄·요양서비스 통합체계 구축

* 동네의원에서 거동불편 노인 대상 방문의료-돌봄서비스 연계 제공

【저출산 대응】

- (출산·육아) 부모급여¹⁾ ('23.1월~), 첫만남이용권(바우처 200만원, '22.1월~), 3+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('22.1월~)²⁾ 등 출산 인센티브 강화

1) 단계적 확대('23→'24년) : (만0세) 월70→100만원, (만1세) 월35→50만원

2)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00~300만원)지원

- 초등돌봄교실·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¹⁾ 하고, 육아휴직기간(1→1.5년) 및 배우자 출산휴가기간²⁾ 확대

1) 초등돌봄교실 시간 단계적 확대(예 : 現 19시 → 改 20시)

2)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('22년)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

【4】탄소중립·기후위기 대응

◇ 기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,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

①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·이행수단 등 검토

- (감축경로) 산업계,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·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NDC 달성방안 마련

*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·연도별 대책,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(~'23.3월)

- (배출권거래) 비용효율적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, 할당방식 등 재검토

-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효율(BM) 기준 할당 강화 검토

- (에너지믹스) 상향된 NDC 이행이 가능하도록 원전 활용도 제고 등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
-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·4호기 건설 조속 재개,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 제고
-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하여 보급을 지속하되,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

②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

- (기업)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·금융지원을 강화하고, 감축실적 연계 지원방식 확대
-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* 확산
- *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사업들에 대한 성과연동 확산 추진
-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
- (국민) 탄소중립 실천포인트¹⁾ 지급대상 활동 확대²⁾

1)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

2) (현행) 전자영수증 등 6개 활동 (개선) 자원순환, 수송분야 등 대상 확대 검토

③ 순환경제·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- (순환경제) 폐플라스틱,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
- 폐플라스틱,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 개발 및 사용후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(22.下)
- (ESG경영)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
- *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'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' 발표('22.7월)
 - ↳ ①ESG 공시제도 정비, ②중소·중견기업 ESG 지원, ③ESG 채권 발행·투자활성화, ④ESG 민간 평가기관 가이드스 마련, ⑤ESG 정보플랫폼 구축, ⑥ESG 전문인력 양성, ⑦공공기관의 ESG 선도
-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*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

* IFRS(국제회계기준)는 ISSB(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)를 설립, ESG 공시 국제표준화 추진중



[1] 사회안전망 강화

◇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보장

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

- (기초생보) 실태조사,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·급여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추진
 -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% 목표(現 30%),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% 목표(現 46%)로 단계적 상향 추진
 -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검토
 - 급여 구분방식 변경*, 기본재산공제액·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등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
- * (현행) 3급여 [대도시/중소도시/농어촌] → (개선) 4급여 [서울/경기·인천/광역시등/그외]
- (긴급복지)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('22.7월~, 現 85% 수준)하고, 재산기준을 완화*하여 지원대상 확대
 - * 실거주 주택을 재산기준에서 공제,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금융재산 기준 인상
- (상병수당) 시범사업* 모형을 다양화하고,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상병수당 도입 추진
 - * (1단계 , '22.7~'23.6월) 6개 지역(부천·포항·서울종로·천안·순천·창원) 대상 시행 (2~3단계, '23.7~'25.6월) 취약계층 대상 시범사업 지역 추가 시행 등 검토
- (재난적 의료비)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¹⁾ 및 지원범위·한도²⁾ 확대

1) (현행)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% 초과 → (개선) 10% 초과시 지원

2) (지원범위) 6대 중증질환 → 모든 질환 (지원한도) 1인당 연 3천만원 → 5천만원

- **(고용보험)** 고용보험을 개인별 소득기반으로 개편 추진*
 - * 소득파악체계 고도화 지속 추진, 관계부처·민간전문가 협의 및 연구용역 추진
 -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자영업자 특수성*을 감안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안전망 구축방안 마련
 - * 실시간 소득파악 및 소득범위, 보험료율 산정, 수급자격 기준 등

② 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

- **(노인)** 기초연금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
 -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(월 30→40만원)
 - 양질의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·시장형 중심으로 확대
- **(장애인)**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
 -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
 - 시범사업(~'24년) 중인 **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¹⁾** 및 **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²⁾**은 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
 - 1) 24시간 일대일 돌봄을 위한 맞춤형 주간활동 및 공동생활 융합지원
 - 2) 10개 지역, 200명을 대상으로 주거·돌봄·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
 -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(~'23.1월)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**특별교통수단(콜택시) 지원* 확대**
 - * '23년까지 약 5천대 지원
 - **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연구용역(~'22.12월) 진행 상황 등을 고려, 적정 지원방안 강구**
 - **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(치매, 뇌혈관성질환) 등 장애인 활동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원대상 확대**
 - * (현행)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이므로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에서는 배제 (개선) 노인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더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
 - **장애아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지원 강화**
 - * 중증 장애아동 가족 대상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

-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, 장애인 직업재활, 일자리 제공 등 소득·고용 보장 강화
-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, 방문 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확대 추진
- (국가유공자) 소득·의료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적극 보완
 -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'25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확대* 지원
 - *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는 중위소득 30~50% 수급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제외
→ '25년까지 현재 지원대상 1.6만명 대비 약 2배 증가
 -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 단계적 확대 및 참전 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(現 75세) 폐지
 - * 現 시군구별 2개에서 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단계적 확대 추진
- (보호아동) 학대 예방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 아동보호체계 구축
 - 아동보호전문기관·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학대피해아동 대상 맞춤형 보호인프라 확대 및 신고의무자·대응인력 교육 강화
 - 대규모 시설 위주 보호에서 탈피해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고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·추진
- (한부모가족) 양육비 지원기준(現 52% 이하)을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가구¹⁾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한부모 가족 보호 강화²⁾
 - 1) 근로사업소득의 70%만 소득으로 계상하는 現제도 감안시 최대 중위 90%까지 지원가능
 - 2) 중위소득 52%이하 구간 월 20만원, 52%초과 구간 월 10만원 지급

③ 서민 주거비 경감,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

- (주거복지혁신) 시장소통, 민관협력 및 계층별·지역별 맞춤형 복지 기반의 「주거복지혁신 방안」 마련(~'22.下)
- (공공임대주택) 생활 SOC 결합, 노후공공임대 효율적 정비 등으로 질적 수준을 제고한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('23~'27년)

[2]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

◇ 근로자·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 보장·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

① 저소득 근로자·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

○ (퇴직소득세 부담 경감)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 대폭 완화*

* 퇴직소득 5천만원의 경우, 10년 근속시 50% 경감, 20년 근속 시 100% 경감

○ (근로장려세제) 재산요건을 완화(2→2.4억원 미만)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, 최대지급액*을 10% 수준 인상

* (현행) [단독가구] 150만원 [홀벌이가구] 260만원 [맞벌이가구] 300만원

○ (국민취업지원제도) 취약계층이 구직기간 동안 안심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

▪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방안 마련

* (현행)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(6개월) 지급 → (개선) 부양가족수·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

▪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취업활동 계획-실제 취업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검토

* (현행) 직종·직무와 관계없이 취업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

▪ 정액으로 지급되는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개편

○ (구직급여) 실업자의 노동시장 조기복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▪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, 실업자 초기상담을 통한 취업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반복·장기화되는 급여 수급 방지

○ (자활사업)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·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

▪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 근로 유인 강화,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

② 구직자·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

- (직업훈련) 개인 희망과 기업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확대
 - (개인)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(~'23년)하고,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(K-Digital Credit)를 위한 지원대상도 확대*
 - * (현행) 청년 재직자·구직자, 중장년 구직자 → (개선) 중장년 재직자 포함('22.7월)
 - (기업)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S-OJT¹⁾ 확대 및 기업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²⁾ 도입
 - 1) 중소기업 직무특성과 역량을 분석하여 현장 중심, 문제해결 중심 훈련과정 개발
 - 2) 필요한 훈련과정을 기업훈련 여건·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
- (취업·채용 지원) 구직자·기업 대상 맞춤형 서비스 강화
 - (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) 구직자 개인별 경력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, 이를 기반으로 훈련·취업알선 등 연계 지원
 - (기업도약보장패키지) 고용여건 향상이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 인사·노무컨설팅, 인프라·환경개선 등 통합 지원

③ 청년에 대한 일자리·주거·교육·자산형성 기회 제공 확대

- (공정채용) 「공정채용법」 입법* 및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(자녀우선 채용 등) 시정 등 추진
 - * 現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실제적·내용적 공정성을 강화하여 입법
 - 공공·민간부문 최종면접자 탈락사유 자율 피드백 시행 지원
 -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지속 추진
- (고용) 재학생 취업지원·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'청년도약 프로젝트'를 통해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
 - 대학 1~2학년 대상 취업·경력설계 확대 및 3~4학년 중심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등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
 - * (현행) 대학졸업생 구직자 위주 취업지원 → (개선) 대학재학생대상 고용서비스 지원

- 다양한 형태의 일경험 프로그램, 지역청년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*
 - * (주체) 기업 중심 → 경제단체, 대학, 지자체, NGO 등 다양한 공급주체 포섭 (방식) 대면.오프라인 방식 → 비대면.온라인.가상공간 등 새로운 공급방식 구현
- '청년도전 지원사업' 프로그램을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
 - * (현행) 구직단념청년에게 자신감 회복.진로탐색 등 단일 프로그램 제공(2개월 이내) (개선) 구직의욕 등에 따라 심리상담.직무체험.취업서비스까지 맞춤형 제공(기간다양)
- (주거) 청년을 위한 신유형 주택(청년 원가주택 등) 사전청약을 연내 개시하고, 추첨제 확대 등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(22.3/4)
-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중위소득 60%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세자금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(22.8월~)
- (교육)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학원생 지원대상 확대*
 - * (현행)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 → (개선) 특수.전문대학원까지 포함
- (자산형성)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신설(23년)하고, 이를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통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
- (취약청년 지원) 취약청년(자립준비청년, 고립·은둔청년, 가족돌봄청년 등) 실태조사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'청년도약준비금' 등 신설 검토

[3] 복지시스템 고도화

◇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

①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

- (선제적 서비스 제공) 수혜자 신청주의를 보완하여 선제적으로 복지 급여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¹⁾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²⁾

1) 개인·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홈페이지, 문자,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

2) (현행) 생계급여, 기초연금 등 15개 복지사업 수급자 대상 → (개선) 전국민(22.9월~)

- **(중복·사각지대 해소)** 중앙부처·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체계적 관리 추진*

* 중앙부처-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, 사후평가 강화 등

②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

- **(민간 참여 확대)**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¹⁾ 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화²⁾·다변화³⁾ 지원

1) 모태펀드 및 사회적 금융을 통한 다각적인 투자확대 방안 모색

2) 소규모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성장전략 수립 지원 등

3)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네트워크 구성, 다양한 공급기관간 MOU 체결 등

- **(사회서비스 시장 확대)** 청년, 맞벌이, 1인 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·공급 추진

- 스마트 사회서비스 R&D 투자 확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

- 수요자의 지불능력,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본인 부담금 차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수요 확대

- **(인프라 보강)**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, 정보 플랫폼 제공,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적극 지원

-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을 거점기관으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민관 협력 강화

③ 고용·교육·간호간병 등 서비스 분야별 전달체계 개선

- **(고용)** 고용복지+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의 역할분담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고,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

- **(교육·훈련)** 부처별로 분산적으로 추진중인 평생학습·직업능력개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 정비 및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*

* 예 : 평생교육바우처-국민내일배움카드(바우처), 온국민평생배움터-HRDnet(플랫폼) 간 연계

- **(간호간병)**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

[4] 지역균형 발전

◇ 지방 경쟁력 제고,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'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' 실현

① 권역별 경제권 형성, 강소도시 육성 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

- (초광역 메가시티) 지역 간 협력 확대를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
 -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, 교통 인프라 구축, 인재양성*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
- * (예시) 지자체-대학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특례 최대 6년 지원 등
- (강소도시 육성) 신규 국가산단 조성, 역사·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

② 세제·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

- (지방이전 세제지원)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
- (균특회계 역할 강화)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하고,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*될 수 있도록 개선
- * (예시) 포괄보조금 지원규모 산정시 낙후도 비중 상향,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

③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

- (지방소멸대응) 인구감소지역에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·문화 등 지원
 - * (보육)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확대 등
 - (교육) 유·초·중·고등학교 교원·시설 통합 운영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등
 - (의료) 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해 방문진료사업 지원 등
 - (주거·교통) 인구감소지역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
 - (문화)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제고 및 활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·컨설팅 등
- ※ 「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」(22.6월 제정, '23.1.1.부터 시행)에 근거
- 지방소멸대응기금*을 마중물로 활용, 여타 국가·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
- * 인구감소지역(89개)·관심지역(18개)을 중심으로 10년간(22~31년) 매년 1조원 지원

IV. 당면현안 대응

- ◇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·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·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
- ⇒ 정부 초반 '민생안정'과 '리스크 관리'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

1 민생 안정

[1]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

- ◇ 원가부담 완화, 물가구조 개선,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

① 원가 절감·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

【유류비 등】

- (유류비)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,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%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('22.8.1.~12.31.)
- (발전연료)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(~'22년말), 발전용 LNG·유연탄 개소세율 한시 인하(△15%, '22.8.1.~12.31.)

【핵심 생계비】

- (주거비)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
 - 읍·면지역, 전용면적 135㎡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~'22년말 → ~'24년말)
 -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장(~'22년말 → ~'24년말)
- (통신비) 어르신·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등* 출시 유도

*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확대,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 강화

- (교통비) 친환경 차량(하이브리드·전기·수소차) 구입*시 개소세 감면 연장
* '24년까지 하이브리드(개소세 등 최대 143만원), 전기차(최대 429만원), 수소차(최대 572만원) 감면 [’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반영 후 추진]
- (양육비) 기저귀·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

2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

- (재정집행) 물가안정에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재정사업(5개 부처, 약 4조원 규모)*을 선별하여 집행상황 집중 점검·관리
*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(농림부),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지원(조달청), 비료가격 안정 지원(농림부), 석유유통구조개선(산업부), 수산물상생할인지원(해수부) 등
- 관계부처 및 중앙-지자체 협업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 즉각 해소
- 주요물자 수급불안 심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, 예산 이·전용 등 추가 조치
- (수급불안대응) 농식품부·해수부 내 「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」을 설치하여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요인 발생시 신속 대응
* 주요 농축수산물·가공식품 수급동향 일일 모니터링 + 주요품목 가격전망 추진
* 가격불안 포착 시 비축량 방출, 가격 할인행사, 긴급 수입 검토 등 시행

3 유통 고도화, 공정경쟁 확립,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

- (유통구조) 주요 분야별 수입·생산·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·유통과정에서의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
 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심사 수수료 감면(30%) 연장 추진
 - 출하지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(APC)를 스마트화(매년 10개소 내외)하고 온라인 도매유통체계 구축
 - 산지 위판장에 풀필먼트 기능*을 추가하여 산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구조 확대
* 물류 전문업체와 협업하여 소비자 주문, 보관, 재고관리, 배송까지 일괄 처리
 - ’23년 예산편성시 주요 분야별 수입·생산·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지속

- (공정경쟁) 공정위와 소관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주요 민생분야 담합·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
 - 경쟁촉진을 위한 분야별 구조개선¹⁾ 방안을 순차 마련하고 진입제한,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 정부규제를 개혁²⁾
 - 1) 매년 주요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 등 시장 분석
(22년 : 알뜰폰, 자동차부품,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 연말 시장분석보고서 발표)
 - 2) '22년 총 44개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선정·개선 추진
- (비축) 주요 곡물·수산물 비축 확대* 및 전용 비축시설 설치
 - * 공공 비축물량 확대('21→'27년, 천톤): (밀) 10 → 50 (콩) 25 → 55 (수산물) 15 → 40
전문 생산단지 확대('21→'25년, 개소): (밀) 39 → 50 (콩) 83 → 200
 - 자급률이 낮은 수입 곡물(밀·대두 등)은 전용 비축시설 추가
 - * 타당성 조사 및 적정 비축물량 산출 연구('22.3/4) → 비축시설 조성(~'27년)

④ **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**

- (부담완화)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¹⁾ 6개월 연장(~'22.12월) 및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 유예²⁾
 - 1) (국유재산) 재산가액의 3→1% (공공기관 소유재산) 기존 임대료의 50%
 - 2) 고용·산재보험료 7~9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 지원
- (계약특례) 국가·지자체 계약시 절차 간소화, 입찰보증금 경감 (5%→2.5%), 대가 신속지급(5→3일) 등 한시특례 연장('22.6→'12월)
- (경쟁력 강화)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('22.3/4)
 - * 디지털 전환 지원, 유망 소상공인 육성,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 등

[2] 주거 안정

◇ 주택공급 확대,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

① **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**

- (공급)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 수립
 -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('22.6월)
 -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(연도별·지역별)을 마련('22.3/4)

- (세제)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
 -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(1년)를 통한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('22.5.10. 소급 적용)
 - 양도세 비과세,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('22.5.10. 소급 적용)
 - '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'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 발표 경감방안('22.5.30.) 보완
 -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→45%로 하향
 - *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.05%p 인하 기 시행중
 -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→60%로 하향 조정하고, '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「특별공제 3억원」 도입*
 - *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→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
 - 종부세 관련 고령·장기보유 납부유예¹⁾ 및 일시적 2주택·상속 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²⁾ ('22.11월 고지분 적용)
 - 1) ^①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, ^②1세대 1주택자, ^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) ^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
 - 2) ^①일시적 2주택, ^②상속주택, ^③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(과표에는 합산)
 -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(종부세) 개편 정부안 확정('22.7월)
- (금융)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
 -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, 주택가격, 소득에 상관없이* 80%로 완화하고 대출한도(現 4억원)는 6억원으로 확대('22.3/4)
 - *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(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·조정대상지역 8억원) 및 소득 요건(부부합산소득 1억원)을 미적용
 -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* ('22.3/4)
 - * (현행)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→(개선) 대출시~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
 - 차주단위 DSR 3단계¹⁾ 시행('22.7.1.)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²⁾
 - 1) (현행 : 2단계)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 → (3단계)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
 - 2) ▶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('22.7.1.)
 - ▶ (현행)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(여신심사위 승인 필요)
 - ▶ (개선) DSR배제 한도 등 확대(여신심사위 승인 필요)('22.3/4)

- 고금리·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·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(20조원)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* 확대
- * 청년·대학생 등 대상 인당 1,200만원 한도, 금리 3.6~4.5% 대출 지원(1천억 확대)
- **(임대차)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**
- '22.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, 매입임대 약 1만호,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(상시)
- '22.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('22.6월)

2 「부동산 관계장관회의」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

- (추진체계) 경제장관·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「부동산 관계장관 회의(부총리 주재)」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
-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, 민관 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 집중
- (추가과제) '22.6월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'임대차 시장 보완방안' 및 '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' 확정·발표

2 리스크 관리

[1] 경제안보 대응

◇ 복잡 다단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 관리

1 종합적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·재정적 기반 마련

- (추진체계)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* 구축
- * 수입·통관단계부터 공급망 교란 가능성 모니터링하는 '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' 마련

- **(관라지원 기반) 공급망 3법* 제·개정**을 통해 공급망 관리·지원기반 구축
 - * 공급망기본법, 소부장특별법, 자원안보특별법
 - 민간재원 활용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노력 지원수단 마련 추진
- **(국제협력) 경제안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**을 위한 다자 협력체계 강화
 - IPEF, CPTPP 등 다자간 경제 블록화 논의에 적극 참여
 - 핵심 원자재 공급국과 교역·맞춤형 지원 확대 등 네트워크 구축

②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 확보 및 유턴·외투기업 지원

- **(해외자원 확보) 민간 해외진출에 대한 용자 및 공공기관 지원 확대**
 - 민간투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 지원비율(現 30%)과 실패시 감면비율(現 70%)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검토
 - 위험성 높은 부문 투자시 공공기관의 위험분담 확대 방안 검토
- **(식량안보 강화) 기초 식량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 확충 및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**
 - * (국내) 밀·콩 전문 생산단지 확충·비축확대, 쌀가루 산업 활성화, 우량농지 보전
(해외) 민간기업의 곡물엘리베이터 지분인수 자금 및 국내업체 연계 지원 등
- **(유턴)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**하고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**첨단산업·신기술 중심의 유턴 유인 확대**
 -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직접생산 전환, 기존 국내사업장 유희 공간 내 설비투자 등도 유턴으로 인정 검토
 - 기존 지역중심(수도권/비수도권) 투자금 지원을 첨단·신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변경하여 유턴효과가 큰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검토
 -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완료 후 국내에 유턴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 완화
 - 유턴효과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·지원수단별·지역별 유턴 지원제도의 적정성을 평가·개선 검토

- (외투) 산업경쟁력 제고,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강화
-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 최대한도(50%) 적용 및 국비 분담률 상향*
- * 분담률(국비:지방비) : (수도권) 40:60 → 50:50 (非수도권) 70:30 → 80:20
-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 기여투자에 대해 한도 산정시 최대 10% 추가지원 추진

[2] 위기관리 강화

◇ **엄중한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, 거시경제 및 가계·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·안정적으로 관리**

① 선제적 위험관리-정책공조에 기반한 위기대응 체계 마련

- **(기본방향)** 거시·금융 안정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-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적기 대응
- **(추진체계)** 기재부 내 '비상경제대응 TF'를 통해 대내외 거시·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
- * 조기경보시스템(EWS)을 통한 가계·기업 등 거시건전성 관리 등
- 거시경제금융회의,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조치 마련

② 거시경제여건·취약계층 피해 등 종합고려한 정책조합(Policy Mix) 추진

- **(재정)** 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·피해지원은 재원조달 다양화* 등으로 거시경제·시장영향 최소화
- * 기존사업 지출 구조조정, 세계잉여금, 기금 여유자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
- 거시경제 안정관리·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, 재정 수입기반 확충,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 지속
- *
 - 모든 재량지출 사업 원점 재검토 하여 최소 10% 의무 구조조정
 -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, 유휴 국유재산 매각·활용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·징수
 -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이양 추진

- (통화·금통위)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 운용 방침
 -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·물가 흐름,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,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,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*
 - * '통화정책방향' ('22.5.26., 금융통화위원회)
- (금융)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 유도 및 제2금융권 등 모니터링 강화
 - 국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한은과의 정책 공조 강화 및 긴급 바이백 등 안정조치 추진 검토
 - * 추경 국채 축소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국채 발행량 축소 및 만기분산 바이백 실시
 -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국채수요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('22.4/4)
 - * 세계채권지수(WGBI) 편입 추진,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,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
- (외환 등) 외채 등 건전성 관리 및 안정적 신인도 유지 노력 병행
 - * 신평사 협의, 한국경제설명회 통해 해외투자자 대상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 소통 강화
 - 외화 LCR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 일정('22.6월) 등 감안,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 개선 검토

3 가계·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

- (만기연장·상환유예 종료 대비)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상환계획 수립
 - 상환계획 수립시 충분한 거치기간 부여, 상환기간도 장기로 운영
 - * (거치기간) 차주 신청시 최대 1년 부여 / (상환기간) 차주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
- (저금리 대출전환)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총 8.7조원 규모 보증·융자 공급(소진공 '22.7월~, 신보 '22.10월~)

- 신보 특례보증 8.5조원을 통해 은행·비은행의 고금리 대출(금리 7% 이상)을 저금리 대출(금리 4~7% 수준)로 전환
- 성실상환중인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(금리 12~20% 수준) 0.2조원을 소진기금 용자(금리 4~7% 수준)로 전환
- (채무조정) 연체(우려)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(30조원 규모, '22.10월~)
 - * ①상환일정 조정, ②상환기간 등에 따른 조정금리 차등화, ③연체채무에 대해 원금감면
-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매입기간(~'22.6월) 추가 연장 검토
-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 마련
- (경쟁력 제고)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 추진(42조원 규모)
 - 약 4조원 규모의 신보, 지역신보 특례보증(보증료 감면 0.5%p) 지원하고 38조원 규모(신보·기은 재원 활용) 운전·재기지원 자금 공급
 - * (신보)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피해 소기업·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약 3조원 공급
(지신보) 코로나 이후 폐업 및 재창업한 소기업·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

4 시장 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

- (위험평가 내실화) 시장의 기업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되었던 신용위험평가 운용 내실화
 - * (현행)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평가(과거 추이 고려)
(개선)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, 코로나 이전처럼 일시적 영향 배제없이 평가
- 시장현황·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업전환·재편 필요성 점검('22.4/4~)
- (구조조정 자금 조성) 만기연장·상환유예 종료(~'22.9월) 이후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, 기업구조 혁신펀드 신규 조성* 추진
 - * 정책금융기관 출자, 민간자금 매칭 → 필요시 재정투입 추가 검토

V. 2022년 경제전망

	2021년	2022년 ^e		2023년 ^e
		[수정]	[당초]	
■ 경제성장률(%)	4.1	2.6	3.1	2.5
■ 취업자증감(만명)	37	60	28	15
- 고용률(%, 15~64세)	66.5	68.0	66.9	68.4
■ 소비자물가(%)	2.5	4.7	2.2	3.0
■ 경상수지(억불)	883	450	800	560
- 수출(전년비, %)	25.7	11.0	2.0	1.0
- 수입(전년비, %)	31.5	18.0	2.5	△1.0

- (성장)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2.6% 성장 전망
 -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,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개선 예상
 - 수출은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겠으나, 기저 영향·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증가세는 점차 둔화 전망
 - * 반도체 매출 전망(% , WSTS<'22.6월>) : ('21) 26.2 → ('22^e) 16.3
 - 투자의 경우 공급망 차질 장기화,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(고용) 취업자수는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(1~5월 +96만명), 대면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 감안시 60만명 증가 전망
 - 다만,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 따른 보건복지·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폭 축소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 둔화 예상
- (물가)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수요 회복세도 확대되면서 4.7% 상승 전망
 -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(5.30),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 감안시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예상
- (경상수지) 유가 급등 등으로 상품수지가 둔화되고, 해외여행 재개로 여행수지도 악화되며 흑자폭(450억불) 둔화 예상

1. 대외 여건

□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 전망

- (성장) 1/4분기 중 우크라이나 사태,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주요국 회복세 둔화

* 세계 상품 교역량(전기비, %, CPB) : ('21.4/4) 2.8 ('22.1)△0.9 (2) 0.2 (3)△0.2

-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,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 지속 예상

OECD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 , 6.8일)

		세계	G20	미국	유로존	영국	일본	중국	인도
'22년 ^e	<'21.12월>	4.5	4.7	3.7	4.3	4.7	3.4	5.1	8.1
	<'22.6월>	3.0	2.9	2.5	2.6	3.6	1.7	4.4	6.9
	조정폭(%p)	△1.5	△1.8	△1.2	△1.7	△1.1	△1.7	△0.7	△1.2
'23년 ^e	<'22.6월>	2.8	2.8	1.2	1.6	0.0	1.8	4.9	6.2

- (물가) 금년 들어 에너지·곡물가격 급등에 수요 회복이 더해져 주요국 물가 상승률은 30~40년만에 최고 수준 기록 중

* 국제 원자재가격(작년말 대비, %) : (두바이유)54 (옥수수)29 (밀)36 (콩)27 (니켈)22

* 미국 : 5월 8.6% ('81년 이후 최고) / OECD : 4월 9.2% ('88년 이후 최고)

-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주요국 수요 회복세도 강해지면서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 전망

OECD 물가상승률 전망(% , 6.8일)

		OECD	G20	미국	유로존	영국	일본	중국	인도
'22년 ^e	<'21.12월>	4.4	4.4	4.4	2.7	4.4	0.8	1.7	4.8
	<'22.6월>	8.8	7.6	7.0	7.0	8.8	1.9	2.0	6.7
	조정폭(%p)	+4.4	+3.2	+2.6	+4.3	+4.4	+1.1	+0.3	+1.9
'23년 ^e	<'22.6월>	6.1	6.3	3.5	4.6	7.4	1.9	3.0	6.5

※ 국제유가 전망 : 하반기까지 높은 수준이 지속되며 연평균 104\$/B 수준 예상

	'20	'21	'22 ^e	<1/4>	<2/4 ^e >	<3/4 ^e >	<4/4 ^e >	'23 ^e
- CERA ('22.6월, 두바이유)	42	69	103	<96>	-	-	-	92
- EIA ('22.6월, 브렌트유)	43	71	107	<100>	<112>	<111>	<105>	97

- (리스크)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, G2 경제 성장세 둔화 심화, 코로나 변이 발생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
2. 국내경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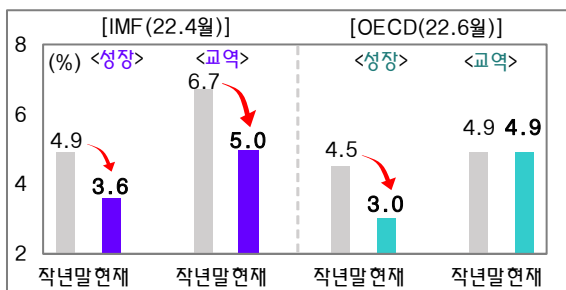
1 경제성장

① [GDP] 실질 GDP 2.6% 성장, 경상 GDP 5.2% 성장 전망

【실질성장률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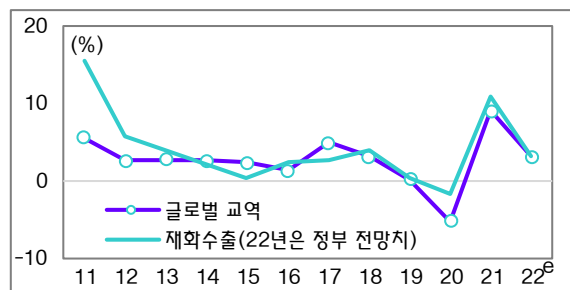
-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,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며 연간 2.6% 성장 예상
-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, 추경 효과 등으로 2/4분기 이후 점차 개선되면서 향후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글로벌 성장·교역 둔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고, 투자 회복 속도도 완만할 전망

글로벌 성장·교역 전망 변화



* 출처 : IMF, OECD

글로벌 교역 및 우리 재화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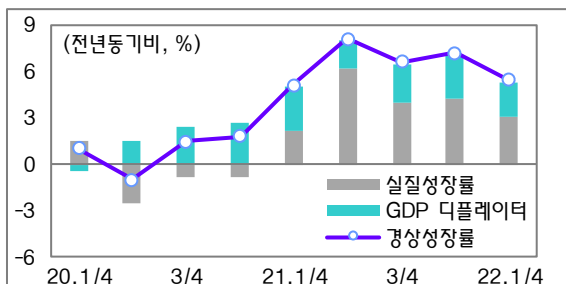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한국은행, WTO

【경상성장률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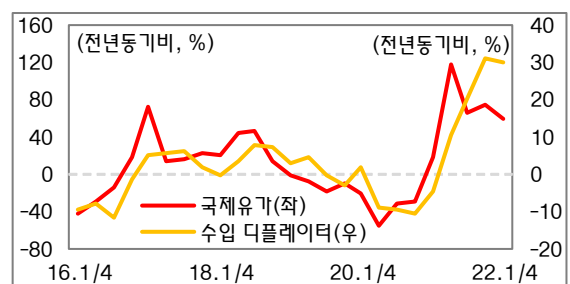
-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었으나, 디플레이터 상승폭 확대로 5.2% 성장(당초 4.6%) 전망
- 디플레이터의 경우 내수부문 상승세 확대, 수입물가(공제항목) 급등 등으로 2.6% 상승 예상

경상·실질성장률 및 디플레이터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국제유가·수입 디플레이터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, 페트로넷

② [민간소비] 연간 3.7%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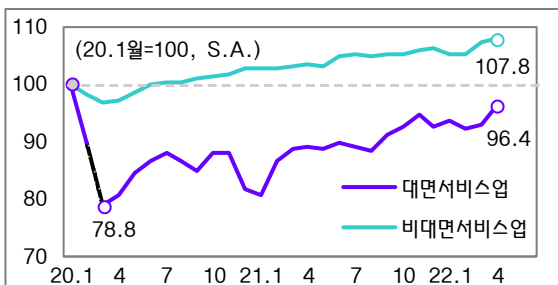
- 민간소비는 1/4분기 오미크론 확산 영향 등으로 부진하였으나, 방역조치 해제(4.18~) 이후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

* 카드매출(전년동월비, %) : ('21.4/4)15.0 ('22.1)17.5 (2)7.6 (3)7.3 (4)**13.8** (5)**16.4**

- 물가·금리상승 등은 구매력 제약 요인이나, 추경효과, 양호한 고용·소득여건, 해외여행 재개 등이 회복세 뒷받침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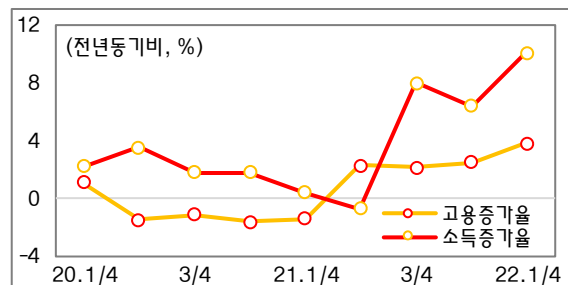
* 출국자수(만명) : ('20.1월) 251 → ('21.1월) 9 → (12월) 14 → ('22.4월) 22

대면·비대면 서비스업 생산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고용·소득 증가율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③ [설비투자] 연간 3.0% 감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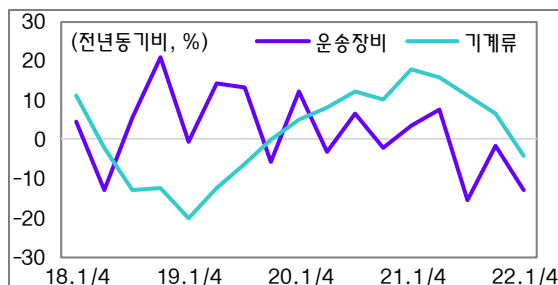
-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차질, 세계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, 기저영향 등으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

* 설비투자(전기비, %) : ('20)7.2 ('21.1/4)6.8 (2/4)0.9 (3/4)△3.0 (4/4)△0.2 ('22.1/4)△3.9

-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심리위축,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, 빠른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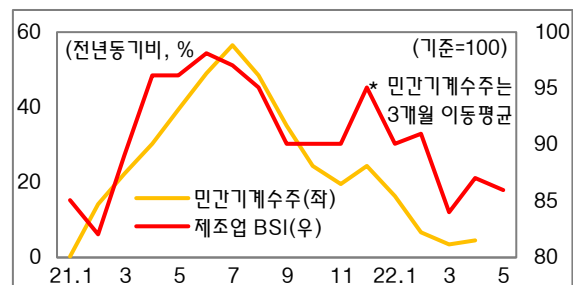
- 다만,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차질 완화, 정부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

부문별 설비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민간기계수주 및 제조업 BSI



* 출처 : 통계청, 한국은행

4 [건설투자] 연간 1.5% 감소 전망

○ 건설투자는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상승, 안전관리 강화 영향 등으로 부진한 가운데, 최근 소폭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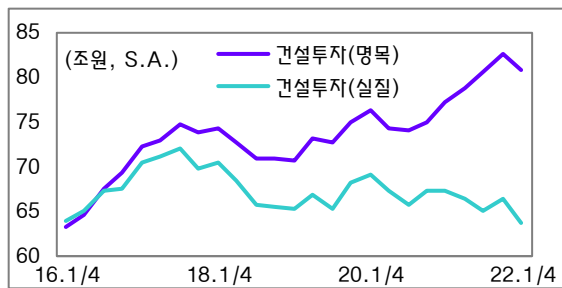
* 건설기성(전기비, %) : ('21.3/4)△1.1 (4/4)4.1 ('22.1)△1.0 (2)△7.2 (3) 1.2 (4) 1.4

▪ 향후 공급 차질 해소 여부가 관건이나, 불확실성이 큰 상황

▪ 다만,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따른 상업용 건물건설 증가, 1/4분기 토목수주 확대 등으로 하반기 완만한 회복 흐름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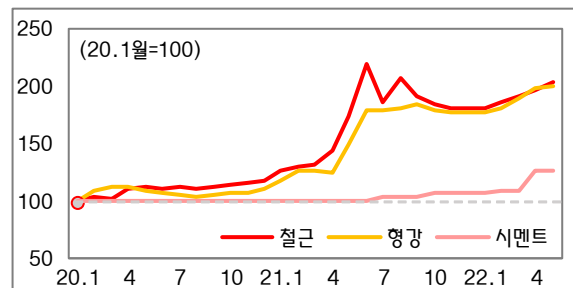
* 토목수주(전년동기비, %) : ('21.1/4)9.1 (2/4)38.1 (3/4)△2.0 (4/4) 19.3 ('22.1/4) 40.5

명목·실질 건설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주요 건설자재 가격 추이



* 출처 : KoreaPDS

5 [지식재산생산물투자] 연간 4.2%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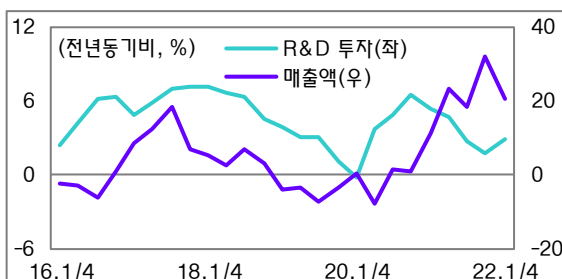
○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최근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 전망

* 지재투자(전기비, %) : ('21.1/4) 0.9 (2/4) 1.6 (3/4) 0.8 (4/4) 1.2 ('22.1/4) 1.6

▪ 기업들의 양호한 영업실적, 정부 정책지원 강화*,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 등으로 R&D·소프트웨어 중심 투자 증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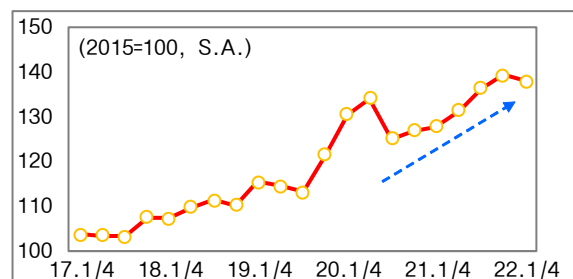
* '22.8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(R&D 예산 우선 배정, 세제 지원 등)

R&D 투자 및 주요 상장기업 매출액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, KIS-VALUE

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



* 출처 : 통계청

⑥ **[수출(통관)] 연간 11.0% / [수입(통관)] 연간 18.0% 증가 전망**

① (수출)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, 하반기에는 기저 영향,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증가세 조정 예상

* 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21.3/4) 26.5 (4/4) 24.5 ('22.1/4) 18.3 (4) 12.9 (5) 21.3

▪ 서버용 반도체 중심으로 견조한 IT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, 자동차·석유제품·신산업 분야의 양호한 흐름 지속 전망

*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, 고성능 CPU로의 전환 등으로 서버용반도체 수요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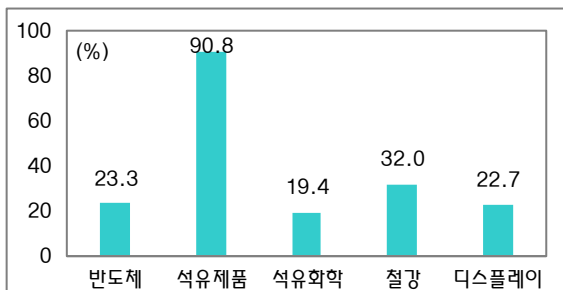
▪ 다만, 美·中 등 주요 수출국 성장세 약화, 공급 차질에 따른 교역 둔화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 예상

* '22년 성장 전망(% , 작년말 → 현재, OECD) : (미국) 3.7 → **2.5** (중국) 5.1 → **4.4**
 <우리 수출비중> <14.9%> <25.3%>

② (수입)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세, 내수 개선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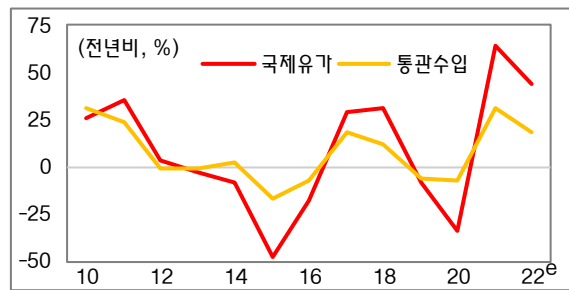
* 수입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1.1/4)7.9 (2/4)24.8 (3/4)26.1 (4/4)26.3 ('22.1/4)22.4 (4)22.7

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(1~5월, 전년동기비)



* 출처 : 무역협회

국제유가 및 수입 증가율



* 출처 : 페트로넷, 무역협회('22년은 정부 전망치)

③ (경상수지) 상품수지 둔화,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등으로 흑자 규모는 작년보다 축소된 450억불 수준 전망

▪ (상품수지) 수출 보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며 흑자규모 축소

▪ (상품외수지) 해외여행 재개에 따른 여행수지 악화,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등으로 적자 전환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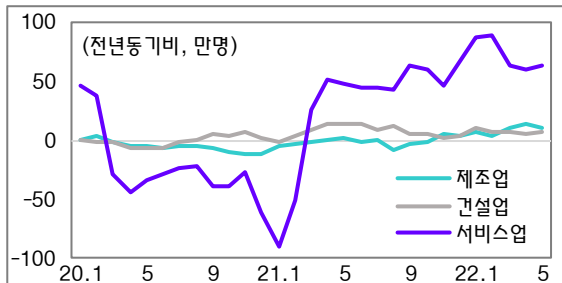
* 글로벌 항공여객수요('19년대비, %, IATA<'22.3>): ('21) 27 → ('22^e) **69**

* '21→'22년^e(억불) : (상품수지) 762 → 455 (상품외수지) 121 → △5

① '22년 취업자 수는 60만명 수준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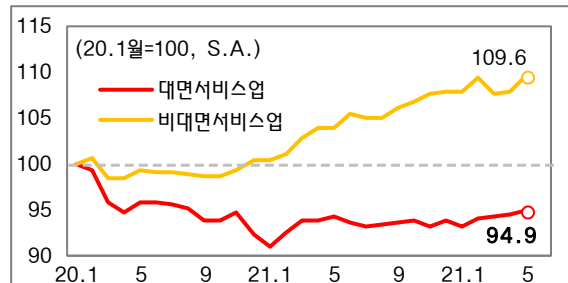
- 고용은 금년 들어 기저 영향,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, 비대면 일자리 증가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 지속(1~5월 +96만명)
 - * 취업자수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22.1) 113.5 (2) 103.7 (3) 83.1 (4) 86.5 (5) 93.5
- 향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,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증가폭 둔화 전망
 - 그간 코로나 충격이 누적되었던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방역 조치 해제에 따른 업황 회복 등으로 고용 증가 예상
 - 다만, 보건소·학교 등 방역인력 축소, 4/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이 하반기 증가세 제약요인으로 작용
 - * 1~2월 직접일자리(근로기간 5~11개월) 대규모 조기채용 → 4/4분기 고용둔화 요인

산업별 취업자 증감



* 출처 : 통계청

서비스업 부문별 고용회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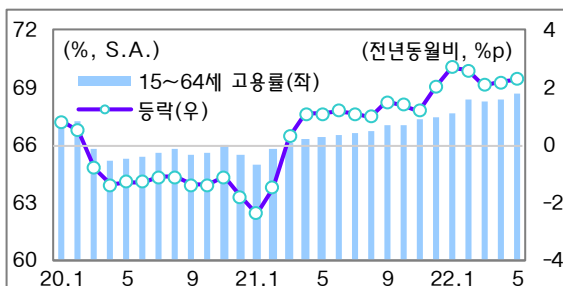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통계청

② 고용률(15~64세)이 큰 폭 상승하고, 실업률은 하락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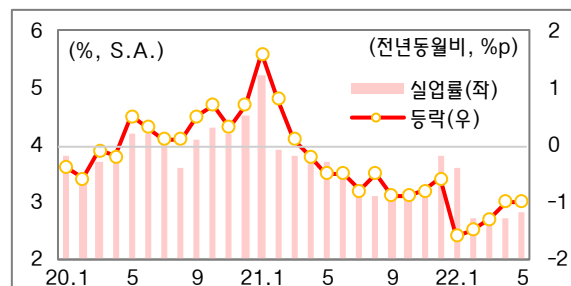
-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률(15~64세)은 '21년(66.5%) 보다 1.5%p 상승한 68.0%, 실업률은 '21년(3.7%) 대비 하락한 3.1% 예상

15~64세 고용률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실업률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◇ 공급측·수요측 상방압력 확대로 '22년 4.7% 상승 전망

- 금년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등 해외발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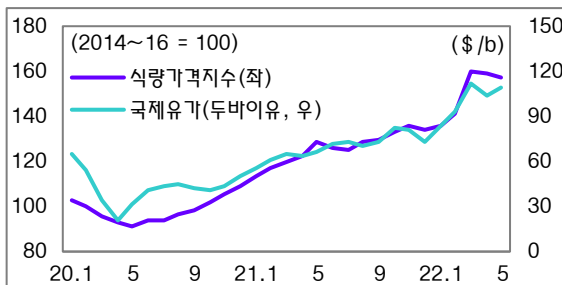
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1.4/4) 3.5 ('21.1) 3.6 (2) 3.7 (3) 4.1 (4) 4.8 (5) 5.4

-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·외식 가격에 반영되면서 광범위하게 오름폭 확대

* 가공식품 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1.3/4) 2.2 (4/4) 3.3 ('22.1/4) 5.3 (4) 7.2 (5) 7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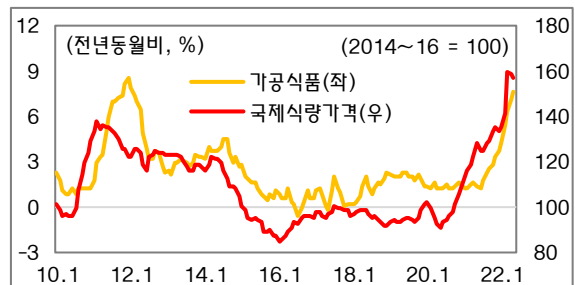
* 외식 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1.3/4) 3.0 (4/4) 4.1 ('22.1/4) 6.1 (4) 6.6 (5) 7.4

식량가격지수 - 두바이유 추이



* 출처 : 페트로넷, FAO

국제식량가격 및 국내 가공식품 가격



* 출처 : 통계청, FA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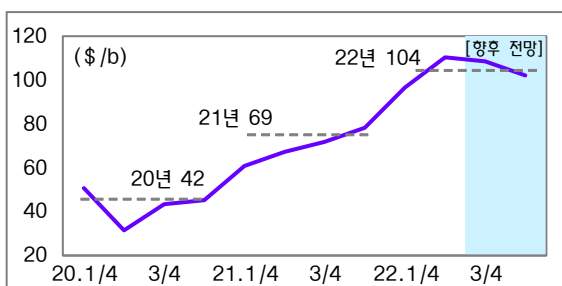
- 국제 원자재가격 오름세와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 지속 전망

-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유지 전망

-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 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압력도 확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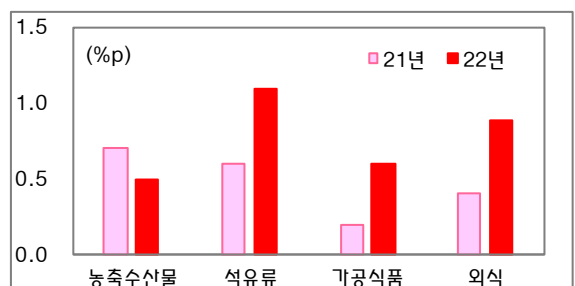
* 개인서비스 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1.3/4)2.7 (4/4)3.1 ('22.1/4)4.2 (4)4.5 (5)5.1

국제유가 예상경로



* 출처 : 페트로넷, 전망은 자체 추정

품목별 기여도 전망



* 출처 : 자체 추정

2022~2023년 경제전망 요약

(전년동기비, %)

	'21년 실적	'22년 ^e		'23년 ^e
		1/4	연간	연간
전망 전제				
세계경제(PPP)*	5.8	-	3.0	2.8
Dubai 유가(\$/bbl)	69	96	104	93
실질 GDP	4.1	3.0	2.6	2.5
민간소비	3.7	4.3	3.7	3.2
설비투자	9.0	△6.2	△3.0	2.7
건설투자	△1.6	△5.5	△1.5	3.5
지식재산생산물투자	4.4	5.3	4.2	3.7
경상 GDP	6.7	5.4	5.2	4.5
고용률(15~64세, %)	66.5	67.4	68.0	68.4
취업자 증감(만명)	37	100	60	15
소비자물가	2.5	3.8	4.7	3.0
경상수지(억달러)	883	154	450	560
상품수지(억달러)	762	107	455	620
수출(통관,%)	25.7	18.3	11.0	1.0
수입(통관,%)	31.5	29.5	18.0	△1.0
서비스·본원·이전 소득수지(억달러)	121	47	△5	△60

* OECD Economic Outlook ("22.6월)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1. 민간중심 역동경제	
① 규제혁파·기업활력 제고	
·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	기재부
· 규제비용감축제, 규제일몰제 도입 등	국조실
· 법령 제·개정시 규제영향분석 내실화	국조실
· 규제권한 지방이양 추진	국조실, 행안부, 기재부
· 규제 원샷해결 도입	국조실
· 상생혁신펀드 조성 검토	기재부
·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신설	국조실
· 입지규제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	기재부
· 기업규모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규제 합리화	국조실 등
·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 개선	공정위
·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추진	국토부
· 신산업 등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 개정	통계청
· 그림자규제 개선	국조실
② 기업투자 확대·일자리 창출	
· 기업의 투자·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한 법인세 등 정비	기재부
· 가업승계제도 개편(대상기업 매출액 기준 2배 이상 확대 등)	기재부
· 경제 형벌규정의 행정제재 전환, 형량 합리화 등	법무부, 기재부, 공정위
·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현장애로 개선 추진('22.7월~)	고용부, 법무부, 환경부, 산업부, 국토부, 공정위
· 부당지원 관련 심사지침('22.下)·사익편취행위 관련 심사지침 개정('23.上)	공정위
· 국가전략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	기재부
· 설비투자 특별자금 확대	금융위
·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	기재부
③ 중소·벤처기업 육성	
· 중소기업 재정지원·정책금융 평가체계 개편('22.下)	중기부, 금융위, 기재부, 산업부
· R&D 재정지원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	중기부
· 중소제조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	중기부
·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	중기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창업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	중기부
·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('22.3/4)	중기부
·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(5천만원 → 2억원)	기재부
· 복수의결권 도입(벤처기업법 개정)	중기부
· 벤처 창업자간 상호부조 방식 공동 프로그램 도입	중기부
④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	
· 기술탈취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	공정위, 중기부
·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·추진(시범운영, '22.下)	공정위, 중기부
·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및 범정부 플랫폼 정책협의체 구축	기재부, 과기정통부, 중기부, 방통위, 공정위, 개인정보위 등
2. 체질개선 도약경제	
① 공공·연금개혁	
· 재정준칙 법제화('22.下)	기재부
·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	기재부, 교육부
·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(SOC·R&D 예타기준 500→1000억원 상향)	기재부
· (가칭)재정비전 2050 수립('23년초)	기재부
· 高 재무위험 공공기관 집중관리제 도입 및 직무중심 보수·인사조직 관리	기재부
· 공적연금 개편 추진(재정계산/'23.3월, 개선안/'23.下)	복지부, 기재부
· 개인·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	기재부
② 노동시장 개혁	
·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('22.下)	고용부
·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('22.下)	고용부
· 경사노위 내 논의 체계마련·과제발굴, 사회적 논의 추진	고용부
③ 교육개혁	
·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('22.下)	교육부
· 대학 규제 혁파('22.下~, 대학규제개선위원회 설치, 신규개선 과제 발굴 등)	교육부
· 대학평가를 자율계획에 따른 先재정지원 - 後성과관리로 개편('22.12월)	교육부
· 대학의 재정 자율성 강화	교육부, 기재부
· 지방대, 직업계고에 대한 지역중심 지원체계·교육과정 개편	교육부
· 신산업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(대책마련/'22.下)	교육부, 기재부, 과기정통부, 산업부, 고용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④ 금융·서비스산업 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·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 규제개선 ·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·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('22.3/4) ·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증권거래세 인하('23년) ·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('22.3/4) · 서비스발전기본법 원점 재검토 및 입법 추진 · 고용·투자·창업 등 세제지원시 서비스업 차별 해소,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·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모형 개발 검토 ·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 단계적 확대 ·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위 금융위, 법무부, 기재부 금융위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금융위, 기재부 기재부, 중기부, 산업부, 국토부, 환경부 등 산업부, 기재부, 국토부
3. 미래대비 선도경제	
① 과학기술·R&D 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('22.11월) · 국가 전략기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 ·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,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&D 중점 투자 · R&D 예타기준 상향(500→1000억원) · 국제협력 R&D 프로젝트 추진 · 스케일업 투자펀드·CVC 연계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·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, 산업부 기재부,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과기정통부, 조달청
② 첨단 전략산업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('22.12월) ·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수립('22.下) ·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 지정 · AI·디지털 분야 육성(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('22.12월) 등) · 바이오, 자율차,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 인프라 구축 ·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재부, 산업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산업부,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산업부, 과기정통부, 해수부 산업부, 과기정통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③ 인구구조 변화 대응	
· 고령자 계속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	고용부
·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 정책 개편 종합 검토	법무부, 행안부, 기재부, 고용부
· 일터-대학 순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('23.上~)	교육부
· 의료·돌봄·요양서비스 통합체계 구축(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('22.11월~))	복지부
·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	고용부, 기재부
④ 탄소중립·기후위기 대응	
·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방안 마련('23.3월)	탄중위, 환경부 등
·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	기재부, 환경부 등
· 신한울 3·4호기 건설 조속 재개, 원전 계속운전 등	산업부, 기재부, 환경부,
· 탄소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	기재부, 중기부, 산업부
·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 확대	환경부, 기재부
· 폐플라스틱,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	기재부, 환경부, 산업부, 국토부
·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	기재부, 산업부, 중기부, 금융위, 환경부 등
4. 함께가는 행복경제	
① 사회안전망 강화	
· 기초생보 지원대상, 급여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	복지부
·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('22.7월) 및 재산기준 완화	복지부
·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('22.7월~),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	복지부
·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, 사회서비스형·시장형 중심 노인일자리 확대	복지부
· 장애인 특별교통수단(콜택시) 지원 확대	국토부
·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고보조 지원대상에 포함	국토부
·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	복지부
· 장애아 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 강화	복지부
· 장애인 소득·고용 보장 강화	복지부
·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(~'25년) 보훈의료 위탁병원 단계적 확대 등	국가보훈처
·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상아동 국가책임 강화	복지부
·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	여가부
· 주거복지혁신방안 마련('22.下),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('23~'27년)	국토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②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, 근로장려금 확대 ·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· 구직급여 제도 개선, 근로빈곤층 탈수급 및 자활 지원 ·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(~'23년) · 공정채용법 입법 및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 등 · 청년도약프로젝트, 청년도전 지원사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·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('22.3/4),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('22.8월~) ·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	기재부 고용부 고용부, 복지부 고용부 고용부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
③ 복지시스템 고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('22.下) · 사회서비스 민간참여 확대(민간투자 활성화, 공급자 규모화, 다변화) ·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, 시장수요 확대 ·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보강 · 평생학습·직업능력개발 사업 간 연계 강화 	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교육부, 고용부
④ 지역균형 발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규 국가산단 조성, 지역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강소도시 육성 ·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· 균특회계 역할 강화 	행안부, 국토부, 산업부 기재부 기재부
5. 당면현안 대응 - 민생안정	
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류세 30% 인하 연장('22.8~12월),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(~'22년말) · 유연탄·LNG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('22.8~12월) ·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~'24년말) ·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장(~'24년말) · 어르신·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등 출시 유도 · 친환경 차량(하이브리드차 등)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(~'24년) ·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 운영 · 주요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등 합동점검단 운영 · 경쟁촉진을 위한 분야별 구조개선 방안을 순차 마련 	기재부, 산업부 기재부, 산업부 기재부 기재부, 교육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농식품부, 해수부 공정위 공정위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요 곡물·수산물 비축 확대 · 소상공인 대상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연장(~'22.12월) ·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지원('22.7~9월분) · 국가·지자체 계약 한시특례 연장(~'22.12월) · 소상공인·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('22.7월) 	농식품부, 해수부 기재부 고용부 기재부, 행안부 중기부
② 주거안정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('22.6월),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('22.3/4) 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→45% 하향('22.6월) 	행안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→60% 하향,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, 고령·장기보유 납부유예 도입 등 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유세(종부세) 개편 정부안 확정('22.7월) 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애최초 LTV 상한 80% 완화, 대출한도 4→6억원 확대('22.3/4) 	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 	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, 매입임대 약 1만호, 전세임대 약 2만호 적기 공급 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('22.6월) 	국토부·기재부·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계장관·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운영 	기재부
5. 당면현안 대응 - 리스크 관리	
① 경제안보 대응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및 상시 위기경보시스템 구축 	기재부, 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간 해외자원 확보에 대한 용자 및 공공기관 지원 확대 	기재부, 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, 첨단산업·신기술 중심 유턴유인 확대 	산업부, 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강화 	산업부
② 위기관리 강화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대내외 거시·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프라 선진화 및 국채수요 저변 확대 등 국채시장 증장기 로드맵 마련 	기재부, 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 개선 	기재부, 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	기재부, 금융위, 중기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인채무자·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	금융위, 중기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 추진 	기재부, 금융위, 중기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업구조 혁신펀드 신규 조성 추진 	금융위